

보 고 사 항

□ 제1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상정 안건

1. 제1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
2.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
3.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4. 기타 일반안건

□ 제1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의 집회에 관한 사항

- 제1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— 2002. 3. 6

(화순군의회 공고 제2002 - 2호)

<공고내용>

- 집회일시 : 2002. 3. 14 (목) 10:00
- 집회장소 : 화순군의회 본회의장

□ 각종 의안 제출상황 보고

-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건

발의일자 : 2002. 3. 6

발의자 : 군수

제안이유

- '98년도 제1차 구조조정시 농업기술센터 읍면 지소를 폐지하였으나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상담과 영농현장의 기술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설치 필요성이 인정되어
- 면지역에 "농업인 상담소"를 설치·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농업정보 및 기술을 제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면지역에 "농업인 상담소" 설치·운영 근거 마련
"지소"를 "농업인 상담소"로 개정(안 제10조)

※ 농업인 상담소 설치계획안

- 화순읍을 제외한 12개 면에 설치

-화순읍은 농업기술센터 본소에서 담당함.

관련근거

○ 읍면 농업인 상담소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안
(농기51740 -538(2001.11.21호))

○ 농업인 상담소 설치협의 통보
[전라남도 차지12200 -181(2002.1.28호)]

*2002. 3. 6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○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건

발의일자 : 2002. 3. 6

발의자 : 군수

제안이유

-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기초생활보호자 가구수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행정 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고
- 복지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복지행정의 기반을 조기 구축을 위하여 정부가 시달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○ 정원 총수(안 제 제2조) : 602 → 607(+5)

· 집행기관의 정원 : 587명 → 592명(+5)

· 의회사무과 정원 : 15명(변동없음)

관련근거

○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

[전라남도 차지 12200 -250 (2002. 2. 5)]

*2002. 3. 6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○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건

발의일자 : 2002. 3. 6

발의자 : 군수

제안이유

○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토지·건물의 청결유지 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코자 함.

주요골자

○ 별첨 참조 (조례안)

관련근거

○ 폐기물관리법

[전라남도 환경 67510-1135 (2001. 7. 11)]

※2002. 3. 6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○ 화순군건축조례증개정조례안 건

발의일자 : 2002. 3. 6

발의자 : 군수

제안이유

○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○ 별첨 참조 (조례안)

관련근거

○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 제2항, 건축법시행령 제20조, 건축법시행령 제78조, 건축법시행령 제79조,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3항

※2002. 3. 6 산업·건설위원회 심사회부

○ 화순군열린군정을 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증개정조례안 건

발의일자 : 2002. 3. 11

발의자 : 군수

제안이유

○ 화순군 직제개편에 의하여 과 명칭이 "종합민원과"로 변경됨에 따라 과장의 직명을 "종합민원과장"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○ 과장의 직명을 "종합민원처리과장"에서 "종합민원과장"으로 변경함.

관련근거

○ 행정기구설치조례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7조

※2002. 3. 12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○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건

발의일자 : 2002. 3. 11

발의자 : 군수

제안이유

○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전라남도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되어 화순군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주요골자

○ 별첨 참조 (조례안)

관련근거

○ 지방세법 및 화순군세조례

※2002. 3. 12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○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건

발의일자 : 2002. 3. 11

발의자 : 군수

제안이유

○ 전라남도로부터 감면조례 준칙안이 통보되어 화순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.

주요골자

○ 별첨 참조 (조례안)

관련근거

○ 지방세법 및 전라남도준칙안

※2002. 3. 6 총무위원회 심사회부

제10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결된 안건 처리현황

○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— 2002. 1. 31 이송

- 공포일자 : 2002. 2. 19

- 공포번호 : 화순군 공포 1715호

○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— 2002. 1. 31 이송

- 공포일자 : 2002. 2. 19
- 공포번호 : 화순군 공포 1716호

○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— 2002. 1. 31

이송

- 공포일자 : 2002. 2. 19
- 공포번호 : 화순군 공포 1717호

○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— 2002. 1. 31

- 공포일자 : 2002. 2. 19
- 공포번호 : 화순군 공포 1718호

○ 화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— 2002. 1. 31 이송

- 공포일자 : 2002. 2. 19
- 공포번호 : 화순군 공포 1719호

□ 각종 의안 제안상황 보고

○ 제1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— 2002. 3. 4 의원발의

- 발의자 :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외 4
- 회 기 : 2002. 3. 14 ~ 3. 21 (8일간)

○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— 2002. 3. 4 의원발의

- 발의자 :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외 4
- 출석요구내용 : 별 첨